2024학년도 제2학기 대상 휴학·복학 신청 안내

I. 신청기간: 2024. 07. 15.(월) ~ 07. 19.(금)

※ 군휴학은 위 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오니 입영통지서가 있는 경우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п. 신청방법 및 진행

[학생신청] (학부(과) 사무실] 생물통합정보시스템 ⇒ 학생기본 ⇒ 학적정보 후학/복학/자퇴 신청 > 신청서 별도 제출 없음> (학부(과) 사무실] 신청한 학적변동 내역 검토 및 접수 → 학부(과) 결재 → 학생복지팀 및 창업지원센터 처리

※ 별도 신청서 제출 없이 인터넷 신청만으로 접수 가능

(단, 자퇴 신청은 직접 학과에 자퇴원을 출력하여 제출해야 함)

Ⅲ. 휴학 및 복학 관련 안내

1. 휴학의 종류

구분	내 용	휴 학 기 간
일반휴학	- 가정 및 개인사정 등으로 인한 휴학 - 학기(6개월) 또는 학년도(1년) 단위로 신청 - 기말고사 시작일부터 신청 불가	
질병휴학	- 질병으로 인한 휴학 - 학기(6개월) 단위로 신청 - 수업일수 또는 학점당 이수시간의 4분의 3이상 이수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성적 인정 선택가능 (성적 인정 시 등록금 이월 불가.)	통산 4년(편입자의 경우 통산 2년) 을 초과할 수 없음
군휴학	- 군복무를 이행하기 위한 휴학 - 수업일수 또는 학점당 이수시간의 4분의 3이상 이수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성적 인정 선택가능 (성적 인정 시 등록금 이월 불가.)	의무복무로 인한 군휴학 기간은 해당 복무기간으로 하며, 의무복무를 제외한 군휴학은 남학생은 최대 4년, 여학생은 최대 3년으로 함
모성보호 휴학	- 임신·출산·육아 또는 이와 관련된 사유로 인한 휴학 (양육: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 수업일수 또는 학점당 이수시간의 4분의 3이상 이수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성적 인정 선택가능 (성적 인정 시 등록금 이월 불가.)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창업휴학	 창업과 관련된 사유로 인한 휴학 2개 학기 이상 이수하고 창업관련 교과목을 1개 과목이상 수강한 학생에 한하여 신청 가능 학생의 전공과 관련된 분야로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함 창업전담부서에서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창업휴학신청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전 창업을 한경우에 신청 가능함을 원칙으로함. (창업기준일: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법인설립 등기일 기준) 기말고사 시작일부터 신청 불가 문의: (서울) 창업지원팀 02-2287-5457 (천안) 창업지원센터 041-623-0343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은 첫 학기에 일반휴학 불가.

2. 휴학·복학 신청 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휴학	일반휴학	- 해당없음
	군제대 후 일반휴학	- 전역증(전역예정증명서 또는 병적증명서 사본)
	질병휴학	- 4주 이상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진단서 *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 첫학기 예외사항: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진단서 첨부하여 신청 가능
	군휴학	- 입영통지서
	모성보호휴학	- 임신·출산·육아 관련 사실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병원발행 임신확인서 등)
	창업휴학	- 창업 사실 증명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소득금액증명원 및 기타증빙자 료 등)
복학	일반복학	- 해당없음
	군복학	- 전역증(전역예정증명서 또는 병적증명서) 입대 후 귀향조치 받은 학생은 1주일 이내 교무팀에 연락하여 군휴학 취소 신청
	창업복학	- 창업 활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소득금액증 명원 및 기타증빙자료 등)

3. 휴학 시 유의사항

- 가. 상기 휴학 신청기간 이후에도 휴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2024.08.31.까지는 신청해야 합니다.
- 나.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하길 원하는 경우(등록휴학),** 최초 등록금 납부기간(8월 20일 전후)에 등록금을 납부하신 직후, 휴학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u>휴학생은 등록금고지서가 발급되지 않음으로 등록금 납부</u>까지는 재학생을 유지하여야 함)
- 다. 휴학은 신청 후 수일 내 처리됩니다. 빠른 처리를 원하는 경우, 신청 후 바로 학과사무실에 연락 바랍니다.
- 라. 휴학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저절로 복학 처리되지 않으며, 학생 스스로가 복학 또는 (휴학을 연장하고자하는 경우) 휴학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개강 4주 이내까지 휴학연장 및 복학을 하지 않을 경우,학칙에 따라 미복학제적될 수 있으므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 **휴학과 관련된 장학 사항 문의**는 학생복지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학생복지팀 02-2287-5016, 천안 학생복지팀 041-550-5021)
- 바. 외국인유학생이 학적변동을 신청하는 경우 국제학생지원팀에 우선 문의한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국제학생지원팀 02-2287-5469, 천안 국제학생지원팀 041-550-5406)

4. 복학 시 유의사항

- 가. 상기 **복학 신청기간 이후에도 복학이 가능**합니다. 단, 원활한 수강신청을 위해서는 복학 신청기간을 준수 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수강신청 장바구니 이용은 휴학생도 가능하나, 수강신청은 재학생만 가능)
- 나. 복학 시 나의 소속학과가 신설, 명칭변경, 폐과된 경우 변경된 학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과로 문의바랍니다.(위 사항은 추후 수강신청 시 신청 교과목의 이수구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 다. 군복학 학생은 대학예비군으로 자동 편입되며, 이를 위해서는 복학 신청 시 군필 여부 및 군번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대학예비군 관련 안내는 학생정보를 통하여 활용됨으로 예비군 소집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락처 및 이메일이 변경된 경우, 학적정보를 반드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예비군대대 02-2287-5117, 천안 예비군대대 041-550-5392)

2024. 06.

상명대학교 교무처장